

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8.

발의자 : 한기호 · 강대식 · 김영선

김희곤 · 임병현 · 신원식

성일종 · 이용 · 노용호

유의동 · 이채익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,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, 관할부대·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·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,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게 펴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,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·軍간 통합적 협력 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11항 신설).

##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13조제11항 신설).

##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대체시설 양여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체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) ① ~ ⑩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(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<u>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.</u>